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김태수 의원 외 10명
- 나. 의안번호: 제1411호
- 다. 발의일자: 2020. 4. 3.
- 라. 회부일자: 2020. 4. 8.

2. 제 안 사 유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, 시장에게는 구청장이 이러한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
- 특히 폐기물 처리사업이 능률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청소인력의 후생복지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바, 청소인력의 후생복지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3. 주 요 내 용

가.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행하는 청소인력의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)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폐기물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사업의 수행주체인 청소인력의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단체협약¹⁾은 서울특별시와 청소인력 노동조합 간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조합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, 1970년대부터 체결해 왔으며, 서울시장은 지방자치 시행 이후인 1995년부터 자치구의 각 구청장으로부터 협약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 단체 및 임금 협약을 대리해 왔음.

<서울특별시-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협약 현황>

구분	단체협약	임금협약
체결주기	2년	1년
주요내용	근로조건, 인사, 복지 및 산재 등	기본급, 상여금 및 초과근무수당 등

- 단체협약은 제1장 총칙을 필두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3장 근로조건(제4절 보건·후생·재해예방 및 보상) 규정에 따라 '20년에는 약 1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명절 격려품 지급, 휴양소지원, 문화·체육행사 지원, 노조사무실 운영 및 교육장 설치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음

1)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해 오고 있는 청소인력의 후생복지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, 이를 통해 청소인력들의 사기 진작 및 보다 능률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

<최근 3년간 청소인력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 지원 실적 및 계획>

지원연도	2018년	2019년	2020년
청소인력(명)	2,465	2,531	2,554
예산(천원)	847,950	937,950	1,089,950
주요 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명절 격려품 지급 · 휴양소 지원 · 문화축제 지원 · 문화시찰 지원 · 노조창립행사 지원 · 체육대회 지원 · 노조사무실 운영 및 보수 		
			· 교육장 설치 지원